

서울교육대학교와 기쁨병원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와 기쁨병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쁨병원이 서울교대 구성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교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구성원의 건강복지를 향상하고 건강검진·상담·응급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양 기관이 공동 발전하고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우대율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서울교대 구성원(교직원, 학생) 및 그 직계가족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2.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우대율 적용
3. 교육실습을 위한 결핵 검진 우대율 적용(비급여 항목인 경우에 한함)
4. 교원자격 취득 시 필요한 미약류 검사에 대한 우대율 적용(비급여 항목인 경우에 한함)
5. 교직원 채용 신체검사에 대한 검진 우대율 적용(비급여 항목인 경우에 한함)
6. 서울교대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자문 및 연계
7. 교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8. 건강강좌, 예방 캠페인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운영 관련 사항 등 일체의 비밀정보 및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② 협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9월 17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총장 장신호

장신호



기쁨병원
GIBBEUM HOSPITAL
기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기쁨병원 빌딩)
병원장 강윤식

강윤식